

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등 공시송달 공고

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6. 30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동부지청장



- 1. 건 명: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위반 관련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
- 2. 근 거: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,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및 동법 제76조의3제2항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사업장명	사업자등록번호	주소	대표	공시송달 내용
진보ENG	119-75-*****	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덕로 32, 101-1210	차O섭	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

- 4. 공고기간: 2026. 6. 30. ~ 2026. 7. 14.(15일간)
- 5. 의견제출안내 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동부지청 노동기준조사과(울산 동구 등대로 50)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(F.0503-8803-0883)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6. 기타사항은 울산동부지청(T.052-259-331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